

[일련번호 : 4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세입처리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△△과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·정산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〈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〉에서는 보조금 반환수입의 성격에 따른 명확한 구분을 위해 ‘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(223-02)’ 목 신설(2020.7.21.) , ‘보조금등 반환금(715)’항 등을 신설(2021.7.19.)하였다.

또한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에 따르면,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 시 세입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다.

구분		세입과목	
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받을 경우 (기초지자체)	국비	원금	국고보조금등반환금(715-01)
		이자	
	시비	원금	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(715-02)
		이자	
	구비	원금	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(223-02)
		이자	기타이자수입(216-03)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과년도 사업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에 대하여 세입목을 '보조금등 반환금'으로 징수결정 하여야하나, '세외수입(그외수입)'으로 징수하였다.

[표]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착오 결의내역

연번	결의일자	건명	금액	적정 과목
1	2022.3.2.		10,962,760원	시도비보조금 등반환금
2	2022.12.29.		25,180원	기타이자 수입
3	2023.1.17.		2,200원	기타이자 수입
4	2024.7.16.		2,741,200원	국고보조금등 반환금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△△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